

원상회복명령서

■ 위반자 성명 : 미 상
주소 : 미 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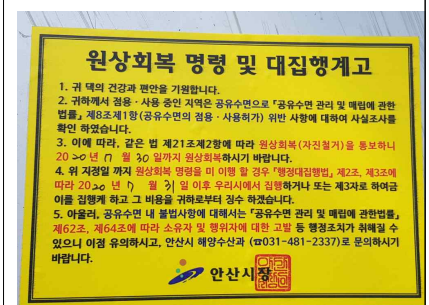
■ 관련법령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, 제21조제2항(원상회복)

1. 귀하는 안산시 단원구 조지동 661-6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여 **컨테이너**에 대해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(자진철거)을 통보하오니 **2020.07.30.(목)까지**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만약 위 지정 기일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3항에 따라 『행정대집행법』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(행정대집행)를 할 계획임으로,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『행정소송법』 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불법행위 현장사진



안 산 시 장

원 상 회 복 명 령 서

■ 위반자 성 명 : 미 상
 주 소 : 미 상

■ 관련법령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,
제21조제2항(원상회복)

1. 귀하는 안산시 단원구 조지동 661-6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여 **가설건축물 및 기타 적치물**에 대해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(자진철거)을 통보하오니 **2020.07.30.(목)까지**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2. 만약 위 지정 기일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3항에 따라 『행정대집행법』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(행정대집행)를 할 계획임으로,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3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『행정소송법』 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불법행위 현장사진



안 산 시 장

원 상 회 복 명 령 서

■ 위반자 성 명 : 미 상
 주 소 : 미 상

■ 관련법령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, 제21조제2항(원상회복)

1. 귀하는 안산시 단원구 조지동 661-6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한 **구조물(건축물) 일체**의 시설에 대해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(자진철거)을 통보하오니 **2020.07.30.(목)까지**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만약 위 지정 기일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3항에 따라 『행정대집행법』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(행정대집행)를 할 계획임으로,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『행정소송법』 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불법행위 현장사진



원 상 회 복 명 령 서

■ 위반자 성 명 : 미 상
 주 소 : 미 상

■ 관련법령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, 제21조제2항(원상회복)

1. 귀하는 안산시 단원구 조지동 661-6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여 **경작행위**에 대해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(자진철거)을 통보하오니 **2020.07.30.(목)까지**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만약 위 지정 기일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3항에 따라 『행정대집행법』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(행정대집행)를 할 계획임으로,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『행정소송법』 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불법행위 현장사진



안 산 시 장

원 상 회 복 명 령 서

■ 위반자 성 명 : 미 상
주 소 : 미 상

■ 관련법령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, 제21조제2항(원상회복)

1. 귀하는 안산시 단원구 조지동 670-2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여 양봉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점용 사용 한 일체의 시설 및 경작물에 대해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(자진철거)을 통보하오니 2020.07.30.(목)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만약 위 지정 기일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3항에 따라 『행정대집행법』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(행정대집행)를 할 계획임으로,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『행정소송법』 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불법행위 현장사진



안 산 시 장

원 상 회 복 명 령 서

■ 위반자 성 명 : 미 상
 주 소 : 미 상

■ 관련법령 :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, 제21조제2항(원상회복)

1. 귀하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87-14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여 양봉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점용 사용 한 일체의 시설 및 경작물에 대해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(자진철거)을 통보하오니 2020.07.30.(목)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만약 위 지정 기일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제3항에 따라 『행정대집행법』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(행정대집행)를 할 계획임으로,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『행정소송법』 제20조에 따라 같은 기간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불법행위 현장사진



안 산 시 장